

[프랜차이즈분쟁]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 - 본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각 징역 2년

4월 실형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돼지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맹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제조법 전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 판결문 중 혐의사실 일부 인용

피고인들은 인터넷 *** 사이트 및 **일보 등에 "3개월 성공 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시면 1억 원 가맹점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매장 비용 전액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맛과 서비스 교육을 위한 현장 교육, 1:1 레시피 전수, 매장경영 노하우 전수뿐만 아니라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까지 매장 오픈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고, 2016. 6. 17.경 부산 사상구 E에서 위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곳에 Y 8호점을 내주겠다. 가맹점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3일 내에 매장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0일까지 가맹점을 오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까지 매장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 관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총 편취규모가 5억 원을 넘고, 총 23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9명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그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¹⁾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Global 기업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무역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비용절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